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 가 침 단 전 략 산 업 경 쟁 력 강 화 및
보 호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고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률상의 약칭과 동일하게 시행령 약칭을 수정(안 2조 등)
- 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 제외
(안 제7조)
- 다. 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첨단전략 산업조정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1조)
- 라.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조항 정비(안 제30조)
- 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 ~ 제38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런 다음”을 “이런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가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을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각각 “위원

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를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을 “(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이하 “기술조정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기술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12명 이내”를 “15명 내외”로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9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법 제10조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조정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소위원회(이하 “기술 소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조정한다.

제9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기술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을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7호) 중 “기술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합의하여 추천하고 기술조정위원장”을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기술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간사 2명”을 “간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술조정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을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하고, 중전의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기술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중전의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분석
2.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소위원회에는 2명의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술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9조”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기술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를 “위원회·조정위원회”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를 “지역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인·허가등에 관한 설명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허가등 신청 당시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허가등 신청 이후에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30조제3항제1호 중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을 “전쟁,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상의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의 제1급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인·허가권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시행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결정으로 인한 도산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⑤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허가권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인·허가권자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34조제1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을 “전략

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1. 선도사업 추진 주체
2. 선도사업의 기간, 규모 등 세부내용
3. 선도사업의 기대효과
4. 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
5. 그 밖에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도사업 선정을 신청한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

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선도사업 관련 소위원회(이하 “선도사업 소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사업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산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3(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전문인력 확보
3.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등 간의 협업 활동
4. 선도사업에 필요한 정보 등의 지원

제39조의 제목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을 “(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

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전문위원회”를 각각 “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42조의2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을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각각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

은 항 제4호 중 “국가전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전략산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전략산업등”을 “전략산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① ----- “전략산업등”----- “기본계획”-----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 중 해	② ----- 기본계획----- -----. ----- 전 략산업등----- ----- 기본계획 -----

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원부자재,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품목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정보자의 고도화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 ~ ⑦ (생략)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가전략산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③ _____
기본계획-----

④ _____

1. 전략산업등-----

2. 전략산업등 -----

3. 전략산업등 -----

⑤ ~ ⑦ (현행과 같음)

(8) _____

“위원회”

게 부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생략)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

-----.

⑨ -----

---이란 다음-----
-----.

1. 기본계획-----

2. (현행과 같음)

제3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

----- 전략산업등-----

----- 위원회-----
-----.

② ----- 기본계획-----

----- 위원회-----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육성·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

-----.

③ -----

----- 위원회-----

-----.

----- 전략산업등-----

④ -----

----- 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2. ----- 전략산업등 -----

----- 위원회-----

⑤ -----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2. 국가전략산업등의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 위원회-----
-----.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

----- 전략산업등-----
-----.

② -----

----- 전략산업등 -----
----- 전략산업등 -----
-----.

제5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
----- 전략산업등-----
-----.

1. 전략산업등-----
2. 전략산업등-----
3. 전략산업등 -----

4. 국내외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 기술 및 체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 전략산업등-----

5. -----
----- 전략산업등-----

제6조(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 -----
----- 전략산업등-----
-----.

② -----

----- 전략산업등-----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

-----.

1. -----

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 금융위원회위원장-----
2. <u>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u>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u>위원회</u> ----- ----- <u>위원회</u> <u>위원장</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u>위원회</u> ----- -----.
④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u>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u>위원회</u> ----- ----- <u>위원회</u> <u>위원장</u> -----.
⑤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위원장은 <u>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u>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u>위원회</u> 위원장은 <u>위원회</u> ----- -----.
⑥ <u>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u>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u>위원회</u>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⑦ ----- ----- <u>위원회</u> -----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u>위원회</u> ----- -----.
②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u>위원회</u> ----- -----.
제9조(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u>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u> (이하 “기술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① ----- <u>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u> (이하 “조정위원회”----- -----.
1. <u>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u>	1.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u>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u> 나. <u>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u> 의 지정·해제 및 지원

	<u>에 관한 사항</u> <u>다. 법 제19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u> <u>라. 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u> <u>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바. 법 제10조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u>		
<u>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u>		<u>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조정한다.</u>
<u>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조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u> <u><신 설></u>	<u>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조정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소위원회(이하 “기술 소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의</u>	<u>② 기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u> <u>1.·2. (생략)</u> <u>3. 산업통상자원부차관</u> <u>4.·5. (생략)</u> <u>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하여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기술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u> <u>7. 기술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합의하여 추천하고 기술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u>③ 조정위원회-----</u> <u>----- 15명 내외-----</u> <u>-----.</u> <u>④ -----</u> <u>-----.</u> <u>-----</u> <u>-----.</u> <u>1.·2. (현행과 같음)</u> <u><삭 제></u> <u>3.·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u> <u>5. ----- 위원회-----</u> <u>-----</u> <u>----- 조정위원회의 위원장--</u> <u>-----</u> <u>-----</u> <u>-----</u> <u>6. 조정위원회-----</u> <u>-- 조정위원회의 위원장----</u> <u>-----</u>

④ 기술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술조정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기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

⑤ 조정위원회-----
----- 간사를 -----
----- 산업통상자원부-----

----- 공무원 중에서 조
정위원회의 위원장이 -----
-----.

<삭 제>

<삭 제>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
----- 조정위원회-----

----- . 이 경우 “위

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조정위원장”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기술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0조(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2.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삭 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신 설>

제10조(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검토·분석
2.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제11조(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기술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3.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소위원회에는 2명의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술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① ---- 제9조

위원회·조정위원회-----

----- 위원회 -----
----- 위원회 위
원장-----.

②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1. 전략산업등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3. 전략산업등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4. 전략산업등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6. 전략산업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	② 전략산업등

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지역의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2. 전략산업등
3.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등
6.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
7. 8. (생략)	7. 8.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지역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④ 지역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같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 제45조-----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u>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 <u>위원회</u>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생략)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u>국가전략산업등</u> 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② ----- ----- ----- ----- <u>전략산업</u> ----- -----.

제28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u>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 ----- ----- <u>위원회</u> -----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u>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u>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 ----- <u>위원회</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특화단지에 필요한 <u>국가전략산업등</u>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 <u>전략산업</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30조(<u>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u>) ①	제30조(<u>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u>) ①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가·허가·협의·승인 등(이하 “인·허가등”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해당 인·허가등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 ----- ----- 다음 각 호의 서류 ----- ----- ----- 1. 인·허가등 신청 당시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허가등 신청 이후에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 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생 략) ③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도산이나 불법행위로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료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상의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의 제1급 감염병--- 2. 사업시행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결정으로 인한 도산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 ----- --- 경우(인·허가권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	--	--	--

<신 설>	⑤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허 가권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인· 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가 기한내에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인·허가권 자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 원) ① (생 략)	제31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 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종업원 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관 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 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관 리) ① ----- ----- ----- -----.
1.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1. 전략산업등-----

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산 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 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0조에 따라 제출한 소요에너 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 한 계획의 협의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 ----- -----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 -----.
1.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위 한 시책의 추진	1. 전략산업등----- ----- -----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산·학	2. 전략산업등 -----

• 연 협력 3. ~ 6. (생 략) 7. 그 밖에 <u>국가전략산업등</u>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 3. ~ 6. (현행과 같음) 7. ----- <u>전략산업등</u>----- ----- ----- ----- ----- 제38조의2(<u>전략산업등</u> <u>선도사업</u> <u>선정</u>)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u>전략산업등</u> <u>선도사업</u>(이하 “<u>선도사업</u>”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u>전략기술보유자</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선도사업 추진계획</u>을 작성하여 <u>중앙행정기관의 장</u>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소관 <u>중앙행정기관의 장</u>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출하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1. <u>선도사업 추진 주체</u> 2. <u>선도사업의 기간, 규모 등 세부내용</u> 3. <u>선도사업의 기대효과</u> 4. <u>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u>	5. 그 밖에 <u>선도사업</u> 추진을 위하여 <u>중앙행정기관의 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u>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u>선도사업 추진계획</u>을 검토하여 <u>위원회</u>에 제출한다. 이 경우 <u>선도사업 추진계획</u>을 검토하기 위하여 <u>선도사업</u> <u>선정</u>을 신청한 <u>전략기술보유자</u>에게 <u>자료보완</u>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중앙행정기관의 장</u>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u>전략산업 경쟁력 확보</u>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u>선도사업 추진계획</u>을 작성하여 <u>위원회</u>에 제출할 수 있다. ④ <u>위원회</u>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u>중앙행정기관의 장</u>이 제출한 <u>선도사업 추진계획</u>을 <u>선도사업</u> 관련 <u>소위원회</u>(이하 “<u>선도사업 소위원회</u>”라 한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u>조정위원회</u>로 하여금 심의·조정하게 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선도사업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산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8조의3(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전문인력 확보
	3.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등 간의 협업 활동
	4. 선도사업에 필요한 정보 등의 지원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제39조(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11. ----- -- 전략산업등----- -----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 ----- ----- -----.
1. 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1. 전략산업등-----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 전략산업등-----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	제40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 전략산업등 ----- ----- -----

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려는 <u>국가전략산업등</u> 관련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전략산업등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에 상정하는 경우 <u>전문위원회</u> 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 위원회 ----- 조정위원회 -----
③ <u>전문위원회</u> 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u>조정위원회</u> -----
④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u>위원회</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4. ----- <u>위원회</u> -----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에 통보해야 한다.	⑤ ----- <u>위원회</u> -----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u>국가전략산업등</u> 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 <u>전략산업등</u>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국가전략산업등</u>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u>전략산업등</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37조제1항에 따라 <u>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u> 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 특성화대학등 -----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u>국가전략산업등</u>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1. <u>전략산업등</u> -----
2. <u>국가전략산업등</u>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u>전략산업등</u> -----
3. <u>국가전략산업등</u> 관련 학생 정원 조정	3. <u>전략산업등</u> -----
4. <u>국가전략산업등</u>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u>전략산업등</u> -----
⑥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u> 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⑥ ----- 특성화대학등 -----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전략산업등</u>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추는 것	4. <u>전략산업등</u>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①·② (생 략)	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은 <u>국가전략산업등</u>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 <u>전략산업등</u> -----
④ 연대협력협의회는 <u>국가전략산업등</u> 의 경쟁력 강화 관련 연대협력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 <u>전략산업등</u> ----- <u>위원회</u>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전략산업등</u>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대협력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u>전략산업등</u> -----
3. <u>국가전략산업등</u> 관련 협력체	3. <u>전략산업등</u> -----

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연대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u>국가전략산업등</u> 을 영위하는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 <u>전략산업등</u> ----- ----- -----
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는 법 제 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 출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협의 회의 심의와 <u>국가전략산업위원 회의</u>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연 대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 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① <u>위원회</u> ----- ----- ----- ----- <u>위원회</u> -- ----- ----- -----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연대협력협의회의 심 의와 <u>국가전략산업위원회</u> 의 심 의 내용을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 ----- <u>위원회</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 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 ----- ----- ----- ----- -----

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u>국가전 략산업등</u>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 탁한다.	----- <u>전략산업 등</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5조제3항에 따른 <u>국가전 략산업특성화대학등</u> 지정신청 서의 접수	6. ----- <u>특성화대 학등</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 락 처	(044) 203 - 4215